정 관



정 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상 호)

이 회사는 주식회사 화승알앤에이(화승 R&A)(이하 이 회사라 칭함)라 말한다. 영 문으로는 HWASEUNG R&A CO., LTD.라 표기한다.

제 2 조 (목 적)

-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1)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
- 2) 산업용고무제품 제조업 및 매매업
- 3) 조선기자재 제조업 및 매매업
- 4) 금속업 기계가공제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
- 5)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동수입품 판매업
- 6) 군납업, 관급자재 제조업 및 판매업
- 7)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
- 8) 주택건설 사업
- 9) 특정 및 일반폐기물 수집,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
- 10) 주식 및 기타 증권에 대한 투자업무
- 11) 방식장비 제조 및 판매업
- 12) 전기공사업
- 13) 상표권 및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
- 14)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
- 15) 자회사 등을 포함한 타 회사와의 설비 및 전자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사업 및 상품의 공동개발, 판매사업과 이를 위한 사무지원 사업
- 16) 경영자문, 컨설팅 및 시장조사업
- 17) 전 각호 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
- 단, 상기 사업중 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영업은 그 허가를 득한 후에 경영하기로 한다.

제 3 조 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

-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상남도 양산시내에 둔다.
-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국내외 각지에 공장, 지점, 출장소, 영업소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 (공고방법)

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(http://www.hsrna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하며, 폐간, 휴간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 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

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.

제 6 조 (일주의 금액)

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백원으로 한다.

제 7 조 (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

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8,993,623 주로 한다.

제 8 조 (주식의 종류)

-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
-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,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,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,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하며, 종류주식의 명칭 및 구체적 내용은 정관의 범위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

제 8 조의 2 (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)

- ① 이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는 것으로 하여,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제1항 기재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
- 다만, 이러한 경우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의 총수가 발행주식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.
-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 1 항 기재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 1 항 기재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.
- ④ 제 1 항 기재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.
- ⑤ 제 1 항 기재 종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위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 1 항 기재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
제 8조의 3 (의결권배제에 관한 종류주식)

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범위 내에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
제 8조의 4 (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)

-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(이하 "상환주식")으로 정할 수 있다. 회사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 8 조의 2 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범위내에서 제 8 조의 3 의 의결권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연 1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, 가산금액은 배당률, 이자율,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한다.
-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상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달리 결의하지 않는 이상 상환주

- 식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될 때가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.
- ④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 단,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,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, 상환대상주식과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.
-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때 해당 주주는 주식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2 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,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,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의 5 (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)

-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(이하 "전환주식")으로 정할 수 있다. 회사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 8 조의 2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범위내에서 제 8 조의 3 의 의결권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있다.
- ②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, 전환조건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 회사가 전환 또는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 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8 조의 6 (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)

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을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(이하 "전환상환주식")으로 정할 수 있고, 전환상환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 8 조의 2 의 이익 배당에

관한 종류주식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범위내에서 제 8 조의 3 의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.

- ② 회사가 전환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주주만이 전환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,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
- ③ 회사가 전환 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, 사유, 전환조건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등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 8 조의 4 의 규정을, 상환가액, 상환기간 및 상환절차 등 상환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 8 조의 3 규정을 각 준용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제 9 조 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 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10 조 (주식의 발행 및 배정)

-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
- 1.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2. 액면총액이 3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3.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
-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.
- 1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2.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 식
- 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

- 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 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4.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 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
-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, 제 2 호, 제 2 호의 2,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
-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
-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①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
제 10 조의 2 <삭 제>

제 10 조의 3 (주식매수선택권)

- ① 이 회사는 임·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내에서 상법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
-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·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·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·직원으로 한다.
-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-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·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·직원의 100 분의 5 를 초과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 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

앤

- 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- 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- 2.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-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.
-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 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 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 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-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-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
- 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 우
 -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 10 조의 4 (신주의 배당기산일)

이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11 조 (명의개서대리인)

-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-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-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제 12 조 <삭 제>

제 13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
-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
-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사 채

제 14 조 (사채의 발행)

-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4 조의 2 (전환사채의 발행)

-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1.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조 제 1 항 제 1 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 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 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2. 제 10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 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-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
- 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 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
- 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금오백억원을 한도로 보통 주식으로 하고, 사채의 액면총액 금오백억원을 한도로 제 8 조 2 의 이익배당에 관 한 종류주식으로 하며, 전환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 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 정할 수 있다.
-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5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
-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1.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조 제 1 항 제 1 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 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 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2. 제 10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 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
- 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 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

- 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오백억원을 한도로 보통주식으로 하고, 사채의 액면총액 오백억원을 한도로 제 8 조의 2 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으로 하며, 그 발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채발행시 이사회가정한다.
-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0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5 조의 2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16 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 4 장 주 주 총 회

제 17 조 (소집시기)

-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소집한다.

제 18 조 (소집권자)

-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9 조 (소집통지 및 공고)

-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20 조 (소 집 지)

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1 조 (의 장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. 다만,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2 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·행동을 하는 등 현 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3 조 (주주의 의결권)

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.

제 23 조의 2 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

이 회사,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

식은 의결권이 없다.

제 24 조 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
-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5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

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제 27 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제 5 장 이사·이사회·감사위원회

제 28 조 (이사 및 감사의 수)

-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- ②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 주총회에서 그 요건을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29 조 (이사의 선임)

-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

-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 이 회사는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.

제 30 조 (이사의 임기)

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 31 조 (이사의 보선)

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 2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.

제 32 조 (대표이사 등의 선임)

-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1 인 이상의 대표이사와 필요한 경우에 부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에서 공동대표를 선임한 경우 공동대표이사는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33 조 (이사의 직무)

-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3 조의 2 (이사의 보고의무)

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3 조의 3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

-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수 있다.
-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(경업금지), 제 397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 398조(자기거래금지)에
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4 조 <삭 제>

제 35 조 <삭 제>

제 36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-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,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37 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 3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38 조 (이사회의 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38 조의 2 (이사회내 위원회)

-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
 - 1. 경영위원회
 - 2. 감사위원회
 - 3. 내부거래위원회
 - 4.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
-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6 조, 제 37 조 및 제 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39 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

-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-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 40 조 (상담역 및 고문)

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 40 조의 2 (감사위원회의 구성)

-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에 제38조의 2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 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
-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 를 모두 상실한다.
- 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 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⑨ 사외이사의 사임,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,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한다.

제 40 조의 3 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

-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, 위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
- ⑥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⑦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.

제 40 조의 4 (감사록)

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여야 한다.

제 6 장 계 산

제 41 조 (사업년도)

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42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

-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재무상태표

- 2. 손익계산서
-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 서 정하는 서류
-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- 1.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
 - 2.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
-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 부터 본사에 5 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①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2 조의 2 (외부감사인의 선임)

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 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3 조 (이익금의 처분)

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- 1. 이익준비금
- 2. 기타의 법정적립금
- 3. 배당금
- 4. 임의적립금
- 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
제 44 조 (이익배당)

-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
-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
제 44 조의 2 (중간배당)

-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의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-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
- 1.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
- 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- 3.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
- 4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
- 5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
- 6.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
-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에 규정된 날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(준비금의 자본전입, 주식배당, 전환사채의 전환청구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45 조 (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

-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정관은 회사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) 정관 제 41 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21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3. (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등의 선임) 정관 제 29 조, 제 32 조, 제 40 조의 2 등 에도 불구하고,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, 대표이사,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.
- 4. (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)
- ① 정관 제 39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.
- ② 정관 제 39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.
- 5. (설립 시 본점의 주소) 당 회사 설립 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.
- 6. 본 정관은 2022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.